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4
----------	-----

2025. 4. 30.(수)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꽃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충청북도 창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음.
- 이에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창업지원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창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창업기업 등의 협력 (안 제5조)
-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창업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7조)
-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간사 등 (안 제8조~제10조)
-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 (안 제12조)
-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안 제13조)
- 창업교육, 창업행사 운영, 실태조사 (안 제14조~제16조)
-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 창업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충청북도는 현재 창업 관련 지원 조례와 정책이 타 광역에 비해 미비하여 계층별, 단계별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창업 초기와 도약 단계에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한 상황임
- 충청북도는 교통망과 첨단 기술 인프라를 갖춘 창업 최적지이기 에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모델 구축과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충청북도의 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컨트롤타워 구축을 포함한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이러한 충청북도의 미비한 창업환경과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창업 촉진 활동 환경 조성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함

나.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충청북도의 창업자 지원과 기술창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용어에서 창업지원 대상자 등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함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해당 지원사업과 조례 운용의 시행을 담보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 관련자들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4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창업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창업지원 자문을 위해 설치되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자문사항, 구성 및 운영,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안 제12조는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창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함
-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지원,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 교육,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창업행사 운영과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창업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7조는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함
- 부칙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 부칙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제정과 시행으로 기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에 대한 연속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음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후 제4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는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역 특성과 지원을 활용한 창업을 촉진과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충청북도의 창업지원은 본 조례안 제정 전 기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기존 조례는 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기에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창업정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창업정책 수립과 창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54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4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창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는 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음.
- 이에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창업지원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창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창업기업 등의 협력 (안 제5조)
-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창업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7조)
-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간사 등 (안 제8조~제10조)
-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 (안 제12조)

-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안 제13조)
- 창업교육, 창업행사 운영, 실태조사 (안 제14조~제16조)
-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 창업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4.
-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창업자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6. “청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과 도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으로 도에서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도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도와 창업 관련 협약을 맺은 도 외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9.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청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기업 등의 협력) 도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활성화 및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 단계·분야·대상별 맞춤형 지원하는 중복형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년, 여성,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등 창업 지원대상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창업자 및 창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 제6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통상국장,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충북신용 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창업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한다.

⑥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창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 장비 시설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판로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8. 청년창업자, 여성창업자, 장애인창업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위한 창업 문화 행사 지원
9. 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 포함)의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10.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 촉진 활동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이용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창업교육) 도지사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창업행사 운영)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시 주요 분석단위로 성별·연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창업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

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및 업무 위탁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 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 안 제11조(수당 등)
- 안 제12조(창업지원)
- 안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안 제15조(창업행사 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기존 창업사업 예산기준 작성, 국비 등 포함)

- 창업자(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 및 육성 사업, 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청년창업자의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사업
 -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대응): 4,368,000천원(국1,778,000 도2,062,000 시군528,000)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대응): 3,843,000천원(국2,343,000 도1,500,000)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대응): 4,050,100천원(국3,790,100 도150,000 시군100,000 기타10,000)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응): 2,058,000천원(국1,858,000 도100,000 시군100,000)
 -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대응): 88,000천원(국80,000 도8,000)
 - 충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265,000천원(도265,000)

- 시니어 기술창업지원(대응): 150,000천원(국130,000 도20,000)
-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 장비 시설지원, 창업 지원시설 사업
 - 메이커스페이스구축 운영지원사업(대응): 730,000천원(국480,000 도100,000 시군100,000 기타50,000)
 - 창업스타티움 운영 지원(대응): 330,000천원(국48,000 도102,000 시군180,000)
 -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대응): 14,150,000천원(국9,000,000 도2,450,000 시군2,450,000 기타250,000)
- 창업행사 운영사업,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위한 창업문화 행사지원
 - 충북노마드포럼 운영: 100,000천원 (도100,000)
- 창업자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운영지원(대응): 120,000천원(국72,000 도48,000)
-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 회의 연간 수당(도비) : 5,850천원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 촉진 활동 지원
 - 창업중심대학(대응): 7,650,000천원(국7,000,000 도300,000 시군250,000 기타100,000)
- 창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창업지원위원회 회의 연간 수당(도비) : 5,850천원
- 실태조사('27년)
 - 충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 20,000천원

※ 충북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중장기 발전 전략('22~'26)

다. 재원조달방안

- 공모(정부)사업 : 국비 매칭 도비 대응비 편성

- 충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충북노마드포럼 운영,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위원회 운영, 연구용역(실태조사)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강창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189,589,000	37,913,800	37,913,800	37,933,800	37,913,800	37,913,800
창업자 (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발굴 및 육성 사업 등	74,110,500	14,822,100	14,822,100	14,822,100	14,822,100	14,822,100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 장비 시설지원, 창업 지원시설 사업	76,050,000	15,210,000	15,210,000	15,210,000	15,210,000	15,210,000
창업행사 운영사업,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대학생 등을 위한 창업문화행사지원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창업자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29,250	5,850	5,850	5,850	5,850	5,850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 촉진 활동 지원	38,250,000	7,650,000	7,650,000	7,650,000	7,650,000	7,650,000
창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29,250	5,850	5,850	5,850	5,850	5,850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20,000			20,000		